

충청북도증평출장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

심 사 보 고

2003.8.19.(화)

기획행정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나. 제출 및 회부일자

○ 제출일자 : 2003년 8월 11일

○ 회부일자 : 2003년 8월 12일

다. 상정일자 : 제21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

○ 2003. 8. 19 :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,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,
심의의결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증평출장소장 이 종 배)

가. 제안이유

○ 증평군설치에관한법률이 제정(2003.5.29, 법률 제6902호) 시행됨에 따라 증평출장소가 증평군으로 승격되어 충청북도증평출장소설치 조례의 존치가 불필요함.

나. 주요골자

- 충청북도증평출장소설치조례 폐지

3. 검토보고 요지

(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한 상 혁)

- 충청북도증평출장소폐지조례안을 검토한 바

증평 주민들의 염원이던 증평군설치에관한법률(법률 제06902호)이 2003. 5. 29일 제정 공포되어 2003. 8. 30일부터 증평군이 출범함에 따라, 충청북도증평출장소설치조례와 증평출장소에서 제정한 증평출장소 관련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서, 본 조례의 폐지는 타당하다고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생략”

5. 토 론 요 지 : “생략”

6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

7. 소수 의견 요지 : “없음”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음”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- 충청북도증평출장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

충청북도증평출장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

충청북도증평출장소설치조례(조례 제2517호 1999.9.7)는 이를 폐지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조례는 2003년 8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폐지) 충청북도증평출장소정조정위원회화조례, 충청북도증평문화회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, 충청북도증평여성회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, 충청북도증평문화의집설치및관리운영조례, 충청북도증평출장소증평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와 충청북도증평출장소하수·분뇨처리장위탁운영에관한조례는 각각 이를 폐지한다.

제3조 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일까지 전조의 증명군조례가 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조례가 제정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.

관계법령 발췌

【증평군설치에관한법률】 [제정 2003.5.29 법률 제06902호]

제1조 (목적) 이 법은 충청북도에 증평군을 설치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충청북도 증평군 설치) ①충청북도에 증평군을 다음과 같이 설치한다.

명 칭	관할구역
증 평 군	충청북도 괴산군 증평읍·도안면 일원

②충청북도 괴산군의 관할구역중에서 증평읍과 도안면을 제외한다.

부칙 <제6902호,2003.5.29>

제1조 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(경과조치)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충청북도 증평출장소(이하 "출장소"라 한다)의 기관 또는 시설에 소속된 직원은 각각 이 법에 의하여 설치되는 증평군(이하 "증평군"이라 한다) 소속의 직원이 된다.

②이 법 시행전에 출장소의 장이나 그 소속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그 밖의 행위는 각각 증평군의 군수나 그 소속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그 밖의 행위로 본다.

③이 법 시행전에 출장소의 장이나 그 소속기관의 장에 대하여 행한 처분의 신청·신고 그 밖의 행위는 각각 중평군의 군수나 그 소속기관의 장에 대하여 행한 처분의 신청·신고 그 밖의 행위로 본다.

제3조 (다른 법령과의 관계) 이 법 시행 당시 출장소의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역 또는 관할구역으로 정하고 있는 법령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그 법령이 개정될 때까지 해당 지역을 중평군의 구역 또는 관할구역으로 본다.

제4조 (지방의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대한 특례) 중평군 설치로 인한 지방의회의원 및 중평군수의 선거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실시되는 지방의회의원의 보궐선거등과 동시에 실시한다.

【지방자치법】

제15조 (조례)

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